**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

○ 본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8조, 금융

투자업규정 제 4-73조 등에 의거, 투자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면자료 입니다.

○ 투자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본 서면자료에 나타난 계약관련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일임계약

체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상품**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투자일임행위를 합니다.

1.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일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 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와 협의에 의해 투자일임의 범위를 지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일임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에 대한 사항 (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취득· 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사항 )
4. 기타 위와 관련된 부수업무
5. **투자대상 금융상품**

회사가 고객의 계약재산을 일임 받음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투자일임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고객과의 협의에 의해 그 대상을 투자일임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동법 제 4조에 정의된 증권

- 지분증권 : 주권, 신주인수권 및 출자지분 등

-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 채권

- 수익증권

- 투자계약증권

- 파생결합증권

- 증권예탁증권

※ "증권" 이라 함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 을 말하므로, 국내외 증권 모두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조 ①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동법 제 5조에 정의된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1. **기타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2.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한 사전 승** **인**

회사는 회사 또는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의 승인을 받으며, 현재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1. **거래하는 증권회사**

투자일임자산을 거래하는 증권회사는 고객이 지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투자일임 업무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및 업무수행 절차**

1.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침**

당사는 계약재산에 대한 투자일임업무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효과적 투자일임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투자철학을 정하여 이를 투자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성장성을 고려한 가치투자
2. 철저한 위험관리
3. 적절한 운용 자산배분
4. 자산의 적극적 운용과 장기투자 지향
5. 기본에 충실한 투자
6. 중장기 투자
7.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
8. **투자일임업무의 수행 절차**

당사의 투자일임업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1. 회사소개서, 운용계획서 등 투자일임서비스 소개
2. 계약권유문서 전달
3. 고객의 투자성향 조사 및 투자목적 등을 위해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4. 투자일임계약 체결
5. 기본수수료 회사계좌에 입금
6. 증권사에 고객명의 계좌개설 ( 카드 및 인감은 고객이 보관 )
7. 분기 1회 이상 투자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8. 계약기간 종료 시 투자실적의 최종평가
9. 성과수수료 발생시 성과수수료 회사계좌에 입금

**3. 고객자산의 관리**

※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은 증권사계좌에 고객명의로 보관되며, 당사는 고객의 금전, 증권, 카드,

통장, 인감 등을 보관 · 예탁할 수 없습니다.

**■ 투자일임담당자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직 위 | 성 명 | 자 격 | 주요경력 |
| 대표이사 | 이 현 철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 흥일기업창조투자자문 |
| 사내이사 | 이 현 석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 유진투자증권케이프투자증권창조투자자문 |
| 과 장 | 강 태 원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 창조투자자문 |
| 사 원 | 박 준 형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 인사이트온창조투자자문 |

1. 당사의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과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담당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임의매매, 부정거래 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22조에 의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상기 임직원 중 실제로 투자일임업무를 담당할 투자일임담당자는 투자일임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 고객과의 이행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기준 및 절차**

- 회사는 고객과 이행상충방지를 위하여 계약사항을 준수하며,

- 신의 성실하게 고객에 대한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본 계약권유문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준법서약서를 징

구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행상충 및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및 이사회에 즉시

보고한 후, 그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 회사의 의무와 책임**

1. **고객의 기초정보 및 투자성향, 투자목적 등 사전파악**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의 기초정보, 투자성향 및 투자목적 등을 투자

정보확인서(별도양식)를 통해 사전에 파악합니다.

1.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시 사전 협의**

회사는 투자일임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투자일임업무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 투자일임 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객과 협의하여 변경합니다. (투자일임계약서에 명시)

1. **비밀유지 의무**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재산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

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1. **고객의 해지요구에 대한에 대한 의무**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을 두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에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있습니다.

1. **고객의 변경사항 확인**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겠습니다.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1. **회사의 행위제한**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회사 및 임직원은 아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 98조 ①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 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에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고객자산 운용시 행위제한**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투자위임을 받아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

률 』 제 98조 ②항에 명시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

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 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2조 제 1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2조 제 1항 제 1호의 시세를 말한다) 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3.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행위
7.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8. 고객으로부터 다음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

는 행위

-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 그 밖에 고객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 99조 제 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 고객의 의무와 책임**

1. **통지의무**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지정된 투자일임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비밀유지의무**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 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1. **투자일임결과에 대한 책임사항**

정당한 투자결과로 발생한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해외투자와 관련한 고객의 책임과 의무**
2. 계약해지 사전통보

일임계약에 의하여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보유 유가증권을 현금화 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유동성문제에 따른 매도시기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각 국가별로 현지 외환거래법상출금신청 후 출금처리일이 다르므로, 매도자금을 현금화하여 계좌로 입금되기까지 일정한 기일이소요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계약의 만기 재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최소 1개월전까지 고객의 의사를 통보 하여야만 원하는 날짜에 자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1. 환손익 발생가능성

해외투자시 환헤지는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이 요청시 환헤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통화의 예상치 못한 가치변동에 따라 환거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외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매도일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투자자 본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 요청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

부에 필요한 자료르르 양도소득세 신고전에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임계약은 고객명의로 운용되므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동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고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요청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소득세신고전에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투자일임수수료의 구분**

투자일임수수료는 주식형, 채권형 등 계약형태로 정하며,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하여 수령합니다.

1. **투자일임수수료의 기준**

투자일임수수료 체계 및 산정방법, 지급시기, 중도 증액·감액 및 해지시의 수수료는 **< 별지 1 > 의**

**수수료율체계표와** 같습니다.

1. **투자일임수수료의 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투자일임수수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을 계산기간으로 하며,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고객이 직접입금합니다.

1. **투자일임계약시에 성과수수료 적용여부**

투자일임계약시 성과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기준수익률 및 성과수수료율을 사전에 약정하며, 성과수수료를 적용하기로 약정할 경우에는 투자자는 성과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산의 재산형태, 투자실적의 평가방법 및 투자결과 통보방법**

1. **계약 개시시점의 재산형태 및 만료시점의 재산반환상태**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재산형태와 만료하는 시점에서 고객에 반환하는 재산형태는 그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합니다. 단, 유가증권의 경우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정합니다.

1. **투자실적의 평가방법**

투자실적은 투자수익률에 의해 평가하기로 하며 성과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투자수익률의 다음의방법으로 산정합니다.

1. 투자수익률은 계약재산액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평가금액(유가증권평가액 + 현금 + 기타 (미수배당금 등)의 연환산증가율로 계산합니다.
2.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일종가를 적용하되 당일종가가 없을 경우 전일종가를 적용하며, 시장가격이없는 유가증권(미상장된 공모주 등)은 편입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락 가격이나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증자분을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채권에 있어서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 등 미실현이익은 산입하여 평가합니다.
4. **투자실적보고**

투자결과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분기 1회 이상 고객과 대면하여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발송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1. 투자일임자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제세금 등 운용현황
2. 투자일임자산의 자산별 잔고, 취득가, 시가 및 평가손익
3. 투자일임수수료를 징수한 시기 및 금액
4. 투자실적의 평가내역
5. 투자일임자산의 운용대상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투자자문회사의 계산으로 거래한 실적이 있는경우에는 그 시기, 실적 및 잔액

**■ 주요주주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 **당사의 주요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주 요 주주 명 | 지분율 (%) |

|  |  |
| --- | --- |
| 엄태웅 | 89% |
|  이현철 | 5.5% |
| 이현석 | 5.5% |

1. **당사의 주요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 | --- |
| 직 위 | 성 명 | 주요경력 |

|  |  |  |
| --- | --- | --- |
| 대표이사 | 이현철 | 창조투자자문흥일기업 |
| 사내이사 | 이현철 | LIG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창조투자자문 |
| 사내이사 | 김종찬 | 창조투자자문 |